

## 중국

## [판례 분석]

# 온라인 서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연대책임

2026. 07. 01.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도서와 내용 및 목록 구성이 일치하는 전자책을 온라인 열람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정보네트워크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만일 플랫폼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서점을 연상시키는 스토어 명칭, 무허가 상태 확인 및 기술적 차단 가능성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해자와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1. 현황

최근 디지털 출판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자책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해적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개인 판매자가 출판물 경영 허가증(出版物经营许可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해적판 전자책을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형태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플랫폼 내 방대한 상품 정보 속에 잠복하여 권리자가 각각의 침해 상황을 개별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수성을 지님.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 경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동적 모니터링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리자로부터 침해를 고지하는 법무 서신을 수신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구체적인 침해 점포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본문에서는 번역 저작물의 전자책이 해적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무단 유통되어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하여 전자책의 저작권법상 성격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대책임 성립 요건을 알아봄.

###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4)湘0781知民初字第228号
-------	----	----------------------

	2심	(2024)湘07知民终25号		
관할 법원	1심	후난성 진시시 인민법원(湖南省津市市人民法院)		
	2심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湖南省常德市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C 씨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C 씨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침해가 성립할 경우 C 씨가 부담할 민사책임의 범위 3. B 회사가 플랫폼 운영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심	1. B 회사가 본 사건에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C 씨의 무단 전자책 판매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 해당함. 2. C 씨는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2,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3. B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li> <li>·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제27조 제1항, 제45조</li> <li>· 네트워크거래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제24조</li> <li>· 출판물시장관리규정(出版物市场管理规定) 제2조 제(2)항, 제26조 제(4)항</li> <li>·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li> </ul>			
최종 판결일	2025년 1월 10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중국의 주요 출판사로서 2015년 번역 위탁 계약을 통해 투자 전략에 대한 지침을 담은 X 도서의 중국어 번역서(이하 "사건 도서"라 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였음. 한편 C 씨는 B 회사가 운영하는 Y 플랫폼 내에 주 영업 분야를 "가상 상품"으로 설정한 "신지서성(新知书城)"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서점을 개설하여 사건 도서의 PDF 파일 형태의 전자책(이하 "분쟁 전자책"이라 함)을 판매하였음.

A 회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회사에게 Y 플랫폼 내에서 A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도서가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전자책이 모두 해적판이므로 해당 경영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법무 서신을 발송하였음. 그러나 해당 법무 서신에는 “신지서성” 및 분쟁 전자책의 판매 링크가 포함되지 않았음. 그 후 A 회사는 C 씨 및 B 회사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 A 회사는 C 씨가 자사의 허가 없이 분쟁 전자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고, B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C 씨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B 회사는 자신이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불과하고, Y 플랫폼의 스토어 개설자에게 사전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으며 “신지서성”에 대한 구체적 점포와 관련 링크를 특정한 유효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소송자료를 받은 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다만 2심에서는 C 씨의 직접침해 자체보다는 B 회사의 연대배상책임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C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
- ② C 씨의 법적 책임
- ③ C 씨의 침해행위에 대한 B 회사의 연대책임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

① 권리 귀속 사항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등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때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자로 추정되며 기존의 저작물을 2차 창작, 번역, 편집하여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은 개작자, 번역자, 편집자에게 귀속됨. 또한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합법 출판물, 저작권 취득 계약 및 확인서 등은 저작권 권리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음. 본 안건에서 사건 도서의 표지, 저작권 표시 페이지, 번역계약 및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관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비롯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②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발행, 공연, 상영, 방송, 편집, 온라인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송한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함. 본 안건에서 분쟁 전자책이 A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건 도서의 내용 및 목차 구성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C 씨는 A 회사의 허가 없

이 Y 플랫폼에서 분쟁 전자책의 열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구체적으로 C 씨는 A 회사 허가 없이 분쟁 전자책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Y 플랫폼에서 사건 도서를 공개적으로 판매하였음. 이는 사건 도서 전파의 시간과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사건 도서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수를 확대하여 저작권자인 A 회사가 사건 도서를 공중에게 전파하도록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C 씨는 사건 도서의 공개 및 전파를 통해 A 회사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러한 행위는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2) C 씨의 법적 책임

C 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다만 소송 진행 중 분쟁 전자책 링크가 삭제되었고, A 회사가 침해정지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봄.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의 종류, 침해행위의 성질, 침해 정도, 합리적 비용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본 안건에서 양 당사자 모두 A 회사의 실제 손실 또는 C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사건 도서의 지명도, 영향력, 상업적 가치, 침해 지속기간, 침해 방식, C 씨의 주관적 과실 정도 등 요소 및 A 회사의 대량 증거 보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C 씨는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합계 2,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3) B 회사의 연대책임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운영자에게 그 신분, 주소, 연락방식, 행정허가 등 진실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등록하여 등록 파일을 구축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갱신해야 함. 또한 <네트워크거래감독관리방법> 제24조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운영자에게 그 신분, 주소, 연락방식, 행정허가 등 진실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등록하여 등록 파일을 구축하며 적어도 6개월마다 한 차례 확인·갱신해야 한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 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운영자에 대하여 동적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본 <방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적시에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하도록 알리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출판물시장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은 “출판물이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4항은 “출판물 발행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네트워크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출판물 발행 업무를 하려는 경영 주체의 신분을 심사하고 경영 주체의 영업허가증 및 출판물경영허가증을 확인하며 증명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만일 증명서나 허가증이 없거나 증명서와 허가증이 완비되지 않은 운영자에게 네트워크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

다”고 규정함.

본 안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B 회사가 C 씨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첫째, 분쟁 전자책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출판물 발행 규제의 대상이 됨. 분쟁 전자책은 저장 및 전파 방식만 다를 뿐 종이책과 내용이 동일한 디지털 형식의 도서이므로 단순한 가상 상품이 아니라 출판물의 온라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는 <출판관리조례> 및 <출판물시장관리규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관련 경영자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경영자의 영업허가증 및 출판물경영허가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둘째, B 회사는 Y 플랫폼의 입점자 자격 심사 및 정기 검증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 <전자상거래법> 제27조와 <네트워크거래감독관리방법> 제24조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적어도 6개월마다 이를 확인·갱신해야 함. 그런데 C 씨가 Y 플랫폼 내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신지서성”은 도서 판매를 암시하는 “서성(书城)”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영업허가증과 출판물경영허가증을 공시하지 않았음. 또한, B 회사는 C 씨가 입점한 2022년 7월 26일부터 관련 링크가 폐쇄된 2024년 6월 17일까지 이와 관련된 충분한 검증 갱신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음.

셋째, A 회사 측의 법무 서신이 B 회사의 관련 주의의무를 발생시킬 정도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법무 서신에는 본 안건의 구체적 점포명이나 상품 링크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A 회사의 출판 도서명과 상품 유형인 전자책이 포함되어 있었고, Y 플랫폼에서 A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이 B 회사에 반복적으로 송달된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법무 서신에 기재된 정보는 B 회사가 본 안건의 사건 전자책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넷째, B 회사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정보 선별과 상품 관리 측면에서 자신의 지위와 예견 가능성 및 통제 능력에 부합하는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는 B 회사가 C 씨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 씨와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3. 판례분석

#### 1) 전자책의 저작권법상 성격과 그 특징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C 씨의 행위를 단순한 디지털 상품 판매가 아니라 종이책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전자책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한 행위로 파악하였음. C 씨가 판매한 분쟁 전자책은 사건 도서와 내용 및 목차 구성이 일치하는 PDF 파일이었고, 구매자는 온라인 구

매 후 온라인 링크를 통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건 도서의 전파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고,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권리자의 허락 범위 밖으로 확장한다고 보아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로 인정하였음.

이러한 판단의 핵심은 전자책의 디지털 형식이 아니라 전자책이 전달하는 저작물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 있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종이책이라는 물리적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표현된 문자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임. 따라서 동일한 저작물이 종이에 인쇄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종이책이 되고,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전자책이 되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동일한 저작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그 성격이 동일함. 즉 종이책과 전자책은 매체와 이용 방식에서는 구별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동일한 저작물의 서로 다른 이용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침해 구조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 사이에 차이가 있음. 종이책 해적판은 물리적 인쇄·보관·배송 과정을 거쳐 유통되므로 침해 규모가 일정 부분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제한됨. 반면 전자책 해적판은 파일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고 클라우드 링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전자책 침해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중이 각자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로 확대됨. 이 점에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저작물을 담고 있지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전파 범위와 시장 대체 효과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전자책이 종이책과 다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2) 플랫폼의 자격 심사의무 이행 판단

본문 판례에서 B 회사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 간접책임 법리와 전자상거래법 제45조<sup>1)</sup>의 필요한 조치의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검토되었음. 법원은 B 회사가 C 씨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삭제, 차단, 링크 단절,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함.

첫째, 분쟁 전자책이 출판물 발행·유통 규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B 회사는 자사가 경영하는 Y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하여 영업허가증 및 출판물경영허가증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함. 이는 법원이 분쟁 전자책이 종이책과 내용이 동일한 디지털 형식의 도서이므로 전자책 판매 역시 출판물 발행 또는 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함.

둘째, 법원은 B 회사가 도서 및 전자책류 상품 판매에 관련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전자출판물 또는 전자책에 관한 독립된 상품분류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점상인 도움센터 웹페이지에도 전자책 판매 시 출판물경영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C 씨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거래위험 방지 측면에서 감독상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1)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삭제, 차단,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셋째, 법원은 C 씨의 점포명에 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성(书城)”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B 회사가 영업허가증 및 출판물경영허가증의 정기적 검증·갱신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음. 이를 통해 법원이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최초 입점 심사에 한정하지 않고, 입점 이후 실제 영업 상황과 상품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동태적 관리의무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음.

넷째, A 회사가 반복적으로 발송한 법무 서신이 비록 C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의 구체적인 점포명이나 상품 링크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저작물 이름과 전자책이라는 상품 유형을 명시하고 있어, B 회사가 침해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었다고 보았음. 이 점은 B 회사가 2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sup>2)</sup>과 대비됨.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보낸 법무 서신이 해당 사건의 구체적 침해 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sup>3)</sup> 본문 판례에서는 법무 서신에 사건 도서명, 전자책이라는 상품 유형, 무허가 전자책 판매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침해대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보았음. 즉, 권리자가 특정 점포명과 모든 침해 링크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이 통지 내용을 기초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검색 및 식별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통지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임. 이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판단에서 통지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정보 처리 능력과 침해 콘텐츠 식별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법원은 B 회사가 보유한 정보 선별 및 상품 관리 능력에 비추어 합리적 기술조치를 활용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플랫폼의 책임을 단순히 사후적 통지에 대한 삭제 의무로 한정하지 않고, 상품분류체계 설계, 입점 업체 자격 심사, 정기적 검증·갱신, 반복적 권리침해 통지에 따른 기술적 식별조치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관리의무로 확장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

####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전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이용 형태라는 점을 통하여 저작권법상 전자책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판단 방법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 서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 이행 기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2) (2022)湘知民终636号

3) 다만 (2022)湘知民终636号 판례에서 법원은 입점 사업자에 대한 정기 자격검증의무와 사업자 정보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미 말소된 사업자가 계속 플랫폼에서 도서를 판매하도록 방지한 점을 이유로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음.

■ 참고자료

판례  
(2024)湘07知民终25号  
(2022)湘知民终636号